# 합 천 군 공 보

공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선 | 기관의 장 |
|---|---|
| 람 | |

제974호

2020. 9. 4.

## 고 시


합천군공고2020-제133호 도로명주소 고시 2


## 공 고


합천군공고2020-제969호 공사완료 공고문(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3

합천군공고2020-제982호 [입법예고]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안) 4


| 회 람 | | | | | | | | | |
|---|---|---|---|---|---|---|---|---|---|


발 행 : 합천군 편집: 기획감사관(055-930-3161, 행정3161)

합천군 고시 제2020 - 133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8. 31.

합 천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우회로 569-31 1098 등 12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별 지 참 조 | | | | |
| 폐지 도로명주소 | | 폐지일자 | 폐지사유 | |
| 별 지 참 조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민원봉사과(☎930-3204)에 문의 또는 합천군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08. 3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합천군 공고 제2020-969호

# 합천군계획시설[유원지: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공사완료 공고

합천군 고시 제2010-6호(2010.02.05.)로 최초 결정하고, 합천군 고시 제2019-183호(2019.11.26.)로 실시계획 인가(변경)한 합천군계획시설[유원지: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가. 2020년 8월 28일**

## 나. 합천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9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합천군계획시설[유원지: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사업

○ 명 칭 :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 A=177,683㎡

○ 시설규모 : A=20,977.6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합천군수

○ 주 소 :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5. 사업기간 : 2018. 12. ~ 2020. 8.

6.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도시건축과(☏055-930-3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공고 제2020-982호

#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31일

##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위탁사무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회 동의안 항목 추가(안 제6조)

나.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과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 제8조)

다. 불필요한 행정절차인 “공증” 내용 삭제(안 제13조)

라.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 조항 신설(안 제18조)

마. 수탁기관의 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 신설(안 제24조)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합천군청 행정과

- 주 소 : (50235)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전 화 : (055)930-3066 / 팩스 : (055)930-3069
- E-mail : skfkghktkd@korea.kr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 | | | |
|---|---|---|---|---|
| 입법예고명 |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안) | | | |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 |
| | | | | |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합천군 조례 제 호

#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합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현황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시작 30일전까지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인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군수가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재정 부담능력

3.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4.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두 차례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른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의 처리가 완료된 후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합천군의회 의원

2. 관계공무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합천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3.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4.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5.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책임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재계약) ① 수탁기관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군수는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2항 본문의 위탁기간 연장은 재계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1년에 1회 이상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 신청서에 소명자료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공모·위탁의 제한)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공모·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중인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한다.